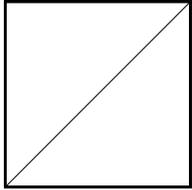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68 호
의 결 연 월 일	2022. 4. 18. (임시 제9차)

의 결 사 항

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의 공시의무
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도 규 상
제출 연월일	2022. 4. 18.

1. 의결주문

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과징금 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 [발행인] 39,900,000원

○ 과징금 : ▣▣▣▣▣(주) [주선인] 28,800,000원

4.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

가. 관계법규 : < 붙임 >

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1항 제2호, 제119조 제1항, 제125조 제1항

(별지 1)

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에 대한 조치안
=====

증권선물위원회는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 제1항, 제125조 제1항 제1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39,900,000원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 [발행인]

- 사업자등록번호 : xxx-xx-xxxxx
- 주소 : xxxxx xxxx xxxxx xx xxxxxx xxx

□ 조치이유

【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】

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'17.4.24.~'17.4.26. 기간 중 새로이 발행된 같은 종류의 증권 '독일헤리티지 1호' 등 3개 펀드*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주선인을 통해 권유함으로써 총 68인의 투자자에게 총 92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* 에스아이케이 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[DLS_파생형]
에스아이케이 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[DLS_파생형]
에스아이케이 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[DLS_파생형]

(별지 2)

□□□□□(주)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□□□□□(주)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 제1항, 제125조 제1항 제5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28,800,000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□□□□□(주) [주선인]

- 사업자등록번호 : xxx-xx-xxxxxx

- 주소 : xxxxx xx xxx xx

□ 조치이유

【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】

○ □□□□□(주)은 발행인이 새로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'17.4.24. ~ '17.4.26. 기간 중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'독일 헤리티지 1호' 및 '독일헤리티지 2호'의 집합투자증권 67억원을 총 58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

<붙임>

관 계 법 규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19조(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) ① 증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.

제125조(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) ① 증권신고서(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투자설명서(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(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,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)
2. 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
3.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·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(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4.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·분석·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
5.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)

6.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
7.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

제429조(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)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(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2. 제119조,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·설명서,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조사단	자산운용감독국
연 락 처	02-2100-2518	02-3145-6725